

'24년 하반기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마케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재) 화성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마케팅 수행기간: 9월~11월)
※ 마케팅 수행기간 내 활동 및 지출 발생 필수(기간 내 전시 마케팅만 소급적용)
- ☐ **(사업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 **(사업규모)** 51개사 이상(선정기업 51개사, 예비 10개사 선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기업 순차 지원
- ☐ **(사업내용)** 마케팅 활동 비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지원
 -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변경 및 추가 불가
※ (예시1) 검색엔진 마케팅 200만원, 디자인 제작 100만원 신청 가능
(예시2) 홍보물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선택 후 디자인 제작 활동 불가

<지원분야 및 항목>

지원분야	지원항목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국문·해외), 제품 사진촬영, 제품 상세페이지 등
디자인 제작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등), 패키지(포장) 디자인, 앱디자인(UI·UX) 등
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구축, 자사몰 구축, 랜딩페이지, 고객지원 페이지 개설 등 ※ 기구축된 홈페이지·자사몰의 운영비 제외
검색엔진 마케팅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키워드 검색 광고, 배너 상단 노출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광고매체 노출	TV, 라디오, 홈쇼핑, 신문, 잡지,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시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팝업스토어 등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홍보물 등

□ (추진일정)

기업모집	기업평가	선정공고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지급
7. 10.~7. 26.	7. 29.~8. 23.	8. 30.	9. 1.~11.30.	12. 1.~12. 6.	12. 23.~12. 27.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신청내용

□ (신청자격)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hipa.hscity.go.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마케팅 지원사업 → 참여신청

□ (신청기간) 7. 10.(수)~7. 26.(금) 18:00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신청 권장

* 신청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제출서류)

- 서류 마감일(24. 7. 26.) 기준 서류 기간 파악 및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
-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요청할 수 있음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신청서	●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023년 매출액 증빙
3	사업자등록증	●		
4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2025. 3. 31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1개월 이내 발급분
6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건축물 대장,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7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	서류마감일(24. 7. 26.)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8	기업확인 증빙서류 사본		●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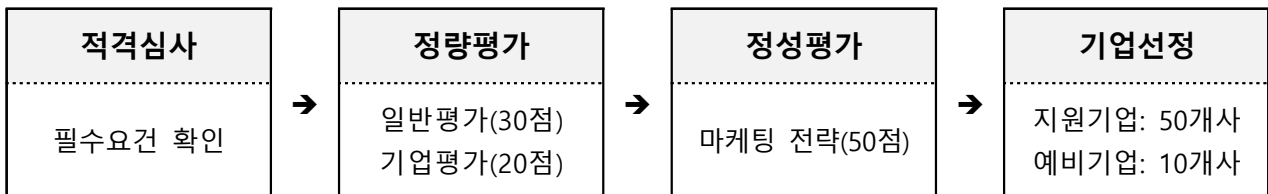
□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지원 제외사항 또는 대상업종^{참조1)} 해당 시 신청불가

구분	지원제외 사항
동일분야 지원	2024년 정부출연금 및 타기관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동일 신청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수혜이력	2024년 상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사업 수혜기업
사업포기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마케팅 활동 포기한 기업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참조2)} 에 해당하는 경우)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과정)



※ 동점시 ①마케팅전략 점수, ②기업평가 점수, ③일반평가 점수, ④접수순으로 선정

※ '2023년 제 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선정

□ (결과안내)

- 선정안내: ①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에 공고 게시 및 ②선정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4년 8월 30일(금)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대상: 선정기업 51개사 및 예비순위기업 10개사

□ (평가방법)

- ① 적격심사: 화성시 소재, 업종, 중소기업 여부, 지원이력, 선정 후 사업포기 여부 등 필수요건 확인
- ② 정량평가: 소재지, 업력, 매출액, 기술개발, 기업인증 등 평가

<정량평가표>

평가항목		제출서류	기준	배점	
수혜 이력	'23~'24년 지원 이력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23년~'24년 마케팅활동 지원금 수혜이력 보유기업 ※ '24년 상반기 수혜기업은 지원불가	없음	0	
			23년 하반기 수혜	-10	
			23년 상반기 수혜	-5	
정량 평가	(30)	화성시 본사, 공장, 연구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 화성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제출 필수 ※ 건축물대장, 연구전담부서 미인정	3개 모두 해당	10
				2개 해당	6
				1개 해당	3
		기업업력	사업자등록증	3년 미만	10
				3년 이상~7년 미만	7
				7년 이상	4
		기업 규모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에 표시된 2023년 매출액	5억원 미만	10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4
				80억원 이상	2
	기업 평가 (20)	기술개발 및 인증	①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출원등록증, 디자인·상표등록은 미인정 ② ISO, KS, CE, HACCP 인증서	8개 이상	14
				6~7개	10
				3~5개	7
				1~2개	4
		기업확인 및 인증	① 이노비즈, 메인비즈 ② 벤처,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3개 이상	6
				2개	4
				1개	2

- ③ 정성평가: 5인의 전문가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합산

<정성평가표>

평가항목			제출서류	기준	배점
정성평가	마케팅전략 (50)	회사 및 제품/서비스 소개	회사의 주요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차별점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해당 마케팅분야 신청 사유, 마케팅 목표 (목표 시장, 목표 매출액 등), 예상 성과 (매출, 고용, 인지도 등)	높음	20
				보통	12
				낮음	5
		마케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마케팅 수행계획의 구체성, 예산 집행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 (유의사항)

- ① 성과조사: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성과관리시스템(질링스)** 가입 필수
 ※ 미가입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추후 선정기업에게 질링스 가입링크 전달 및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 예정
- ② 지원불가: ①2024년 정부출연금 및 타기관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동일 신청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②2024년 상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불가
- ③ 사업포기: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하거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배제됨
- ④ 결과안내: 마케팅 활동 진행 안내 및 결과 통보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므로, 이메일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 두절 및 안내문 미숙지 주의
- 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신청 권장**
*** 신청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⑥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 확인 후, **12월 말 중 지원금 지급예정**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①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②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⑦ 우선선정: '2023년 제 1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선정**
 ※ 필수 서류 기재 및 제출 필수

<문 의 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dh8760@hsbiz.or.kr ☎ 031-278-4234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jonghyun@hsbiz.or.kr ☎ 031-278-4392

-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참조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진흥원 내부 검토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